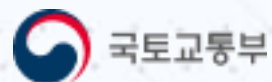


㉞

경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안내 매뉴얼



경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안내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6.7.16 부터 전세버스의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

① 연료구매카드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드신청방법 전세버스 경유 연료구매카드 발급신청

카드발급문의 ☎KB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66-7189 ☎우리카드 1588-9955

RFID카드발급문의 버스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1644-8487

발급안내 유가보조금포털시스템 (www.uga.go.kr)
버스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busc card.co.kr)

② 유가보조금 산정방식

○ 지급단가

- 1 유류세연동보조금 : 노선버스 지급단가의 70% (164.01원/ℓ)
- 2 유가연동보조금 : 노선버스 지급단가의 70%
(노선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산출식으로 산정된 단가의 70%)

○ 유가보조금 산정방법

$$\text{유가보조금(원/ℓ)} = \text{주유량(ℓ)} \times \text{지급단가(원/ℓ)}$$

예시) 주유소에서 100ℓ 주유하고 지역별평균단가가 1,800원인 경우

유류세 연동보조금 100(주유리터) × 164.01(지급단가) = 16,401 원/ℓ

유가연동보조금 $\{(1,800(\text{지역별평균단가}) - 1,700(\text{기준단가})) \times 0.7(\text{초과분의 70\%})\} = 70\text{원/ℓ}$
100(주유리터) × $\{70 \times 0.7(\text{노선버스의 70\%})\} = 4,900\text{원/ℓ}$

유가보조금 16,401(유류세연동보조금) + 4,900(유가연동보조금) = 21,301원/ℓ

③ 주유형태에 따른 결제 방식

○ 비지정주유형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전국 주유소에서 주유 시 결제

○ 지정주유형태

- ① 주유소와 협의 후 카드사에 지정주유소 등록요청
- ② 차량별로 발급받은 거래카드를 사용하여 주유
- ③ 결제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와 협의된 날짜에 외상으로 주유했던 대금을 주유소 단말기결제 혹은 웹 결제

※ 웹결제 : 거래카드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주유했던 대금을 주유소에 가지 않고 버스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법

부정수급 행정상 제재 및 금지사항

① 행정상 제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위반횟수	처분내용
1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1년 보조금 지급정지

운송사업자의 일부 차량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운송사업자 전체 차량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조치가 부과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

② 주요 행위 금지사항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 22조)

 의무보험 미가입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행위	 카드강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 연료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일으키는 행위	 사용량조작 실제 주유리터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타유종사용 실제 주유하는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목적외사용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의 유류분에 대하여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타차량주유 연료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번호 이외의 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③ 부정수급방지 모니터링

국도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심거래 상시점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예방중